

# 「정신건강전문가 학교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3363
----------	------

제출연월일: 2025년 10월 20일

제출자: 서울특별시교육감

## 1. 제안이유

학생 자살·자해 등 정신건강 위기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이 증가함에 따라, 조기발견-전문개입-사후 관리로 이어지는 통합지원의 활성화가 시급한 상황임.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정신건강전문가 학교지원」 사업을 보다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신건강 관련 전문기관에 그 운영을 위탁함으로써 사업추진의 고도화와 학생지원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사무명: 정신건강전문가 학교지원

나.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
-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다. 필요성

- 학생 심리개선 효과로 학교현장의 수요와 만족도가 높음에도, 현 추진 구조(단년도 용역계약)로 인해 학기 초 수요 집중시기에 지원공백이 발생하는 문제가 지속되어 민간위탁을 통한 상시 운영체계 구축이 필요함.
- 신청-인력배치-사업수행 등의 행정절차가 분절적·중복적이고, 계약체결 이전까지 전문인력의 채용이 지연되는 등 행정 비효율 발생
- 정신건강 관련 병원, 학회 등 정신건강 관련 전문기관에 운영을 위탁하여 정신건강 정책추진의 고도화 및 사업의 연속성 보완함으로써, 학생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라. 위탁사무

- 정신건강전문가의 학교방문 심층평가 · 상담 · 컨설팅 · 사례관리 수행
-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 및 치료 연계
- 의료기관 연계 시 발생하는 치료비 지원
- 사례관리시스템 운영을 통한 통계 · 성과관리
- 교사 · 학부모 대상 정신건강 이해 교육 및 위기대응 연수 운영
- 학생 정신건강 문제 대응을 위한 학교 구성원에 대한 컨설팅
- 교육지원청별 거점센터 협력체계 구축 및 정례 협의체 운영
- 정신건강 관련 전문가 역량강화 연수 및 사례회의 운영

마. 위탁기간: 2026. 3. 1. ~ 2027. 12. 31.(1년 10개월)

바. 수탁자 선정방식: 공개모집 및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운영

사. 예산규모: 금6,338,800천원(금3,169,400천원×2년)

3. 참고사항

가. 정신건강전문가 학교지원 민간위탁 추진 계획: 【별첨 1】

나. 관계법규: 【별첨 2】

- 「학교보건법」 제7조 및 제11조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4조

## 【별첨 1】

미래를 여는 혁학교육



서울특별시교육청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신건강전문가 학교지원 민간위탁 추진 계획

1. 관련: 민주시민교육과-17386(2025. 10. 17.), 2026년 정신건강전문가 학교지원 추진 계획
2. 정신건강전문가 학교지원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추진 계획을 아래와 같이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 가. 위탁사무명: 정신건강전문가 학교지원
  - 나. 위탁기간: 2026. 3. 1. ~ 2027. 12. 31.(1년 10개월)
  - 다. 위탁비용: 금6,338,800천원(3,169,400천원 × 2)
  - 라. 세부내용: 【붙임】 참조

붙임 정신건강전문가 학교지원사업 민간위탁 추진 계획 1부. 끝.

★ 주무관 서형경 상담마음건강담당 송미숙 민주시민교육과 정진권 평생교육과장 대결 2025. 10.  
당장학관 정 김오영

평생진로교육국 전결  
정

협조자

시행 민주시민교육과-17415 ( ) 접수 ( )

우 03178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48, 서울특별시교육청 (신문로2 / http://  
가, 서울특별시교육청)

전화 02-399-9733 / 전송 02-6973-9939 / minyuuh@sen.go.kr / 비공개(7)

소중한 개인정보 문서는 공개 여부 및 직원 열람제한 확인!

# 정신건강전문가 학교지원 민간위탁 추진 계획

민주시민교육과

정서·행동 고위기 학생의 증가에 따라 학생 지원의 고도화가 요구되나, 현재 단년도 계약으로 운영되는 사업에 비효율과 관리공백 문제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정신건강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민간기관에 사업을 위탁하여 안정적이 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I 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2026년 정신건강전문가 학교지원 계획」(민주시민교육과-17386)

## II 필요성 및 타당성

### ○ 행정의 비효율과 불안정

- 신청-인력배치-사업수행 등의 행정절차가 분절적·중복적이고, 계약체결 이전까지 필수인력 채용이 지연되는 등 행정 비효율 발생

### ○ 학생관리 공백 해소 필요성 제기

- 학생심리 개선 효과로 학교현장의 수요와 만족도가 높음에도, 현 사업구조(단년도 용역계약)로 인해 학기 초 수요 집중시기에 적시 개입이 지연되는 문제의 해결방안 모색 필요

### ○ 의학적·전문적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운영

- 정신건강 관련 병원, 학회 등 전문기관 민간위탁 운영으로 정책 추진의 고도화 및 사업의 연속성 보완

### III 2025년 사업추진 현황

- 사업명: 정신건강전문가 학교지원
- 사업기간: 2025. 5. ~ 2026. 02.
- 사업내용
  - 학교방문 심층평가 및 전문기관 연계·지원 서비스
  - 교사, 보호자 대상 자문 및 교육
  - 의료기관 연계 시 치료비 지원
- 운영형태: 직영(권역별 거점병원 용역 계약 체결·운영)
- 소요예산: 1,470,000천원(교육부 특별교부금 + 교육청 대응투자금)
- 거점센터 현황

구분	거점병원명	관할 지구	정신건강전문가(명)
1권역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동작관악	3
2권역	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병원	강남서초	"
3권역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서부	"
4권역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동부, 북부	"
5권역	국립정신건강센터	강동송파, 성동광진	2
6권역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중부, 성북강북	"
7권역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남부, 강서양천	"

- 최근 3년간 실적

구분	심층평가 및 개입	전문의 사례회의	전문기관 연계	치료비 지원
2022년	223명	563건	199명	97명
2023년	203명	413건	213명	154명
2024년	326명	349건	286명	203명
계	752 명	1,325 건	698 명	454 명

## IV 민간위탁 추진 계획

### 1. 추진 개요

- 사무명: 정신건강전문가 학교지원
- 위탁기간: 2026. 3. 1. ~ 2027. 12. 31.(1년 10개월)
- 위탁비: 금6,338,800천원(3,169,400천원×2)  
※ 위탁비는 예산 교부, 심의 및 계약 심사 등에서 차후에 변경될 수 있음.
- 수탁기관 선정: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개최
- 위탁사무
  - (학생 지원) 정신건강전문가가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정신건강 위기학생을 대상으로 심층평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병의원 등 전문기관 연계 및 지원
  - (학교 컨설팅) 학생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학교 구성원의 이해와 효율적 대처방안을 제시하여 학교의 대응역량 강화
  - (치료비 지원) 의료기관 연계 시 발생하는 치료비 지원
  - (교육공동체 역량강화) 교사, 학부모, 정신건강전문가 역량강화

### 2. 추진 절차

민간위탁 사전조사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의회 동의	일상감사	공모 및 수탁기관 선정	위탁·수탁 계약 체결	정보 공개
민간위탁 사전심사위원회	교육감 결재	제333회 정례회	감사관	수탁기관선정 심사위원회	계약 체결 위탁사무 연계·연수	수탁기관 계약결과 공개
'25년 10월	'25년 10월	'25년 12월	'25년 12월	'26년 1월	'26년 2월	'26년 2월

#### ○ 민간위탁 사전조사

- 검토대상: 정신건강전문가 민간위탁 적정성 및 필요성
- 검토방법: 민간위탁 사전심사위원회 구성 및 개최를 통한 자문
- 자문·검토 내용: 민간위탁 추진의 타당성, 필요성, 민간위탁 외 기타 추진방식의 효율성 검토 등

## ○ 의회 동의

- 시기: 제33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2025.11. 3. ~ 12.23.)
- 절차: 의안 제출 → 의회 심의

## ○ 일상감사 실시

- 대상: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민간위탁 계약
- 절차: 사업부서 요청 → 감사관 감사 실시
- 검토자료: 일상감사의뢰서, 사업예산서, 사업계획서 등

## ○ 수탁기관 선정

- 방법: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
- 절차



- 위원회 구성: 9명 이내
  - 임명직: 교육감 소속 관계 공무원(1명), 위촉직: 외부 전문가(4명)
- 수탁기관 선정 기준: 인력,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업무의 관련성

## ○ 위·수탁 계약 체결

구분	계약 주요 내용
일반적인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계약기간, 계약금액(비용지원 및 경산), 위탁내용(위탁시설·재산 및 운영방법 등), 위탁조건, 성실의무, 기밀유지, 사건·사고 보고</li><li>■ 계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방법, 재산보전</li><li>■ 사고발생 시 배상문제 등</li></ul>
지휘·감독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취소·정지·시정 사항</li><li>■ 연1회 이상의 일반감사</li><li>■ 계약내용의 이행실태에 대한 자료제출 및 이행여부 점검방식</li></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고용승계관련 규정, 사무편란 작성·비치</li><li>■ 위탁업무에 개인정보처리가 포함된 경우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첨부(별첨 5참조)하거나 반영하여 사용</li><li>■ 재위탁의 금지, 계약이행보증금 등</li></ul>

## ○ 기타사항

- 위탁사무 범위 명확화: 위탁·수탁기관 간 업무처리 기준 설정, 비용부담 범위 및 시설물 보수·운영 한계 설정
- 연간비용 지급단가 및 지급방법 결정: 지급방법은 행정여건을 감안하여 수탁업체와 계약으로 정함, 청구에 의한 정산 지급
- 비용청구 및 지출방법 등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

## V

## 향후 일정

연번	추진 일정	내용	비고
1	2025. 10월	서울특별시의회 동의안 제출	
2	2025. 12월	서울특별시시의회 동의	
3	2026. 1월	감사관 일상감사 실시	
4	2026. 1월	수탁기관 선정	
6	2026. 2월	위탁·수탁 계약 체결	

## 참고

##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믿기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교육감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교육감은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감정·관리사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단순 행정사무로써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 ② 교육감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민간위탁을 해야야 한다.

**제4조의2(의회동의 및 보고)** ① 교육감은 제4조제1항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의회의 동의에 따라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기존 또는 새로운 수탁기관과 계약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③ 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본조 신설 2019.3.28.]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교육감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2. 수탁기관의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3. 수탁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수탁기관의 기능과 업무의 관련성
-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서울특별시교육청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④ 수탁기관 공개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은 교육감에게 수탁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① 교육감은 수탁기관의 선정에 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가 되어야 한다.

1. 교육감 소속 관계 공무원

2.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민간위탁 대상사무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민간위탁대상기관을 선정한 날까지로 한다.

⑤ 위원회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을 확인하고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⑦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수당과 예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사대상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사대상 기관(법인·단체나 그 기관인 경우 대표자)과 친족관계인 경우

2. 위원이 심사대상 기관에 심사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사대상 기관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심사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사대상 기관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8조(계약의 체결 등)** ① 교육감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명칭(성명)·주소

2. 민간위탁의 목적

3. 민간위탁 사무 및 그 내용

4. 민간위탁 기간

5. 민간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6. 수탁기관의 의무 및 수탁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7. 계약의 해지

8. 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

9. 계약의 해석 등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제4호에 따른 민간위탁 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교육감 또는 수탁기관이 제2항의 민간위탁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기간 만료 120일 전 까지 위원회에 민간위탁 계약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민간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수탁기관의 사무처리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계약의 개선여부를 심사한 후 이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처리할 때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교육감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③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10조(지휘·감독)** ① 교육감은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수탁기관의 수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사용료 및 입장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처리상황의 감사)** ① 교육감은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고, 관계 임·직원의 인사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재위탁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교육감의 소관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이를 다른 기관이나 법·언·단체 등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7017호, 2019.3.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외화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참고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정신건강 위기 학생 지원)**

② 교육감은 정신건강 위기 학생 지원을 위한 사업 중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업무를 학생 정신건강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 【별첨 2】

### 참고

### 학교보건법 제7조, 제11조

제7조(건강검사 등) [연혁](#) [관련](#) [문헌](#)

- ① 학교의 장은 학생과 교직원에 대하여 건강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교직원에 대한 건강검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건강검사를 할 때에 질병의 유무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실시 기관에 의뢰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건강검사를 한다.

- 2008.2.29, 2011.12.31, 2012.3.21, 2013.3.23>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각종학교의 1학년 및 4학년 학생. 다만, 구강검진은 전 학년에 대하여 실시하되, 그 방법과 비용 등에 관한 사항은 지역실정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다.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제3호의 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각종학교의 1학년 학생
  3. 그 밖에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학생
-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건강검사 외에 학생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학생을 별도로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④ 학교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검사를 연기하거나 건강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⑤ 제2항에 따라 건강검사를 한 검진기관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검사결과를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와 해당 학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⑥ 학교의 장은 제2조제1호의 정신건강 상태 검사를 실시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학부모의 동의 없이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자체 없이 해당 학부모에게 검사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3.21, 2016.3.2, 2021.3.23>
- ⑦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강검사의 시기, 방법, 검사항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2.3.21, 2013.3.23>

[전문개정 2007.12.14]

### 참고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4조

제14조(자살위험자 지원 및 정신건강 증진 대책) [문헌](#)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신건강에 이상이 생긴 것으로 인하여 자살 위험에 노출된 자에 대하여 필요한 의료적 조치가 적절히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위험자를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 선별검사 도구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위험자의 조기 발견, 상담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선별검사 및 제3항에 따른 상담·치료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11조(치료 및 예방조치 등) 연혁 문현

- ① 학교의 장은 제7조에 따른 건강검사의 결과 질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에 대하여 질병의 치료 및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학생에 대하여 제2조제1호의 정신건강 상태를 검사한 결과 필요하면 학생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30>
1. 학생·학부모·교직원에 대한 정신건강 증진 및 이해 교육
  2. 해당 학생에 대한 상담 및 관리
  3. 해당 학생에 대한 전문상담기관 또는 의료기관 연계
  4. 그 밖에 학생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 ③ 교육감은 검사비, 치료비 등 제2항 각 호의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3.12.30>
- ④ 학교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보건소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보건소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개정 2013.12.30>